



제14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근거 마련 등〉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344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근거 신설	3
2. 사회보장제도 평가 근거 마련	5
3.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주기 연장	10
4. 사회보장지출 통계 작성·관리 근거 마련	15
5.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	20
6.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23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3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29.

(3) 회 부 일 : 2024. 8. 30.

나. 제안이유

사회보장제도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생애주기별 교육·고용·주거·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 재정 관련 통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 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 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 시기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계 시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종전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5조 제4항 삭제).
- 라. 국가승인통계로 산출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 중인 사회보장지출 통계의 산출·관리 근거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 마.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업무들에 대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규정을 기존 제32조의2에서 보칙(제7장)으로 이동하고 제44조를 신설함(안 제44조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평가·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시범사업은 개별 법률의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규정 또는 포괄적인 사업 수행

조항 등에 근거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성 평가 및 본 사업으로의 환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다만, 보건복지부는 개별 법률 등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음.

□ 이에 개정안은 사회보장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시범사업의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사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차원에서도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¹⁾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²⁾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의 하나로서,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보다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 것으로 보임.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장제도 평가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단체의 장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u> <u>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u>

	<u>에 따라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의 확장 등으로 그 수와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옴.

- 참고로 2022년 기준 국가 사회보장제도는 1,310개(전체 사업 수의 14%)이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94조 9,261억원으로 2019년(148조 8,769억원)에 비해 30.9% 증가하였음.³⁾

□ 사회보장제도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복지 욕구 충족 및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⁴⁾

3) 사회보장위원회,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408p

4)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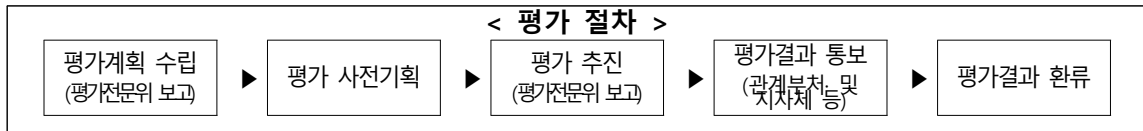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예컨대, 최근 실시된 제27차 사회보장위원회('22.3.4.)에서는 '21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인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지역기반 정신건강지원 제도', '농가소득보장제도'의 평가 결과·정책 제언을 포괄적으로 심의하였음.

< 사회보장제도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평가를 통해 제도 통합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평가대상)**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 상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체
 -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 사회적 이슈 및 관심도가 높은 사업
 -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기타 사회보장제도 성과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평가주기)** 매년 2~3개 사업군 및 개별사업 선정·평가
- **(평가절차)**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①평가계획 수립 → ②평가 사전기획 → ③평가실시 → ④평가결과 통보 → ⑤평가결과 환류 절차에 따라 이행관리



- **(평가지표)** 사업단계별 공통지표 및 사업군 특성에 따른 사업군별 성과지표 중심 종합평가

< 공통지표 구성 >

구분	공통지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 잠재적 지원대상자 중 정책지원대상 비율(%)
	대상자의 표적화	-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된 집단 중 사업군의 보호필요집단 비중
	사업간 관계	- 사업군내 세부사업의 대상자 설계시 대상자 중첩 또는 누락 - 사업군내 세부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한 유사, 중복
투입 · 집행	재원투입의 충분성	- 사업군 규모 고려 시 예산투입 충분성
	지원방식의 적정성	- 세부사업의 급여유형(현금, 현물 등) 등 특정 정책수단의 편중 비율 - 사업별 지원방식의 적정성
산출	사업대상자의 수급률	- 수요대비 수급률에 대한 적절성
	사업(급여)의 충분성	- 세부사업의 대상자 1인당 급여액(또는 서비스 지출액) 적절성
성과	사업군 성과 달성도	- 사업군이 목표한 성과(육구 총족률) 달성 비율
영향	사회, 경제적 영향	- 사업군 관점에서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성적 평가 - 사업군의 정책적 제언(전달체계 개선, 사업성과 향상 방안 등)

- **(환류)** 확대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종합적 정책평가를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후속 관리*
- * ①평가결과 및 제도개선(안) 평가전문위 보고 → ②평가결과 및 제도개선(안)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③평가대상 관계부처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안) 통보 → ④관계부처 수용여부 및 이행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 ⑤제도개선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전문가 검토 및 평가전문위 보고

자료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 평가과제 >

구분		평가과제	연구기관
제1차 기본 계획 (‘14~ ‘18)	‘16	사회보장제도 노인건강분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제도 고용복지분야	한국노동연구원
		아동·청소년·여성·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정책협회
	‘17	사회보장제도 생계지원분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제도 생활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우처 사업 정책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기본평가)	고려대학교
		사회보장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기본평가)	육아정책연구소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기본 계획 (‘19~ ‘23)	‘19	산모영유아의 필수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현황 및 효과성 분석	고려대학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현황 및 효과성 분석 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	사회서비스 인력 및 관리체계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지자체 출산지원제도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기반 정신건강 지원제도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생애주기별 현금성 복지제도 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직군별 현금성 복지제도 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제3호⁵⁾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의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으로 부의되었을 때의 소극적 업무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보장제도 평가 업무 수행 및 위탁의 명확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5)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다만,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를 의식하여 사업이 왜곡되게 집행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 주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주기 연장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존에 2년 주기로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삭제 및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생략) ④ <u>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u>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중장</u>

	<u>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재정 전망 및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추이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부담의 규모 등 향후 재정 여력 및 지속가능성 파악을 위한 추계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 운용 등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⁶⁾ 및 동법 시행령 제2조⁷⁾는

6)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추계 세부지침에는 재정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사회보장위원회는 현재 2년 주기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는 재정추계의 투명성·신뢰성·전문성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재정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재정·통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개요 >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추진체계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재정 전문위원회 (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재정·통계센터
추계 기간과 범위	· 추계기간 : 해외 사례, 인구 추계 및 장기재정전망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추계범위 :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Public Social Expenditure) 9대 정책영역* 대상 *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
추계 내용	1. 추계 결과 -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기준 노령, 보건 등 9대 기능별 추계 - 자원별(사회보험, 일반재정), 의무·재량구분별 지출 추계 -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분야(주요재정 분야)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 및 분야별 주योग정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2. 재정상태 심층 분석 - 노령·보건 등 복지지출 기능별, 자원별, 제도별(일반재정 분야) 구성 및 추이 등을 OECD 평균, 주요국 등과 비교·분석 - 고령화 정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등을 종합 고려한 현재와 미래의 복지지출수준 등 분석 3. 제도개선안 마련 - 제도안정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개선안 마련
주요 내용 및 절차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계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기대 효과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중장기적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전망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적 방향 제시
실시 연혁	2014년 제1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6년 제2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9년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20년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24년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11월 발표 예정)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현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2014년 이후 격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재정추계 방법은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분야를 나누어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각 사회보험⁸⁾ 기관의 장기 재정추계결과를 원용하고 있는데,

추계에 활용되는 공통전제(인구, 거시경제변수) 및 사회보험(국민연금 등)과 주기가 상이하여 추계의 정합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주기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정추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근거 자료가 되는 4대 연금 등 장기 재정계산 주기를 비슷하게 하여 재정추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적어도 3년이라는 주기로 설정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기에 맞춰 3년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주기(예시)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국민연금(5년)											
장래인구추계(2~3년)											
사회보장	2년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재정추계	적어도 3년										

자료: 보건복지부

8)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다만, 당초 장기 재정추계의 전망 주기를 격년으로 비교적 짧게 설정한 이유는 재정 추계의 주요 변수(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출산율, 금리 등)에 대한 가정과 실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수정하고, 재정추계를 활용하여 수립하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비교적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바,

재정추계 주기를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입법취지와 달리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재정추계의 주기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표현은 평가 주기를 고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정확도 제고를 위한 신축적인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정추계의 주기가 행정편의적으로 설정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4조⁹⁾에 따른 재정 계산 등에 맞춰서 실시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9)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지출 통계 작성·관리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신설>	제32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의 현황 관리 및 국제 수준과의 비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 비용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이하

“사회보장지출통계”라 한다)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
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
램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재정
정보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
리되는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보
조금관리정보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
여 관리되는 지방보조금관리
정보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u>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u> 6.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세입·세출 정보</u> 7.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세입·세출 정보</u> 8. <u>그 밖에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u>
--	---

나. 검토의견

□ 현재 사회보장위원회는 「통계법」 제24조¹⁰⁾에 따라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국가승인통계)¹¹⁾ 통계를 산출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국가간 사회보장수준을 비교하는 기본통계로 활용되는 한편, 국가의 정책 수립에도 활용되고 있음.

10)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1)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임(승인통계명: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승인번호 : 제11777호(2009.4.27))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 개요 >

(연혁) OECD 가입('96.12월) 이후 Social Expenditure(SOCX)를 OECD 협약 제3조에 따라 제출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라는 용어로 국가승인통계('09년 승인) 산출 중
 (목적)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지출수준을 비교하기 위함
 (내용)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
 (분류 항목) 노인,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

□ 개정안은 현재 사회보장위원회가 작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 통계가 그 지향하는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고용·보건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는 협소한 영역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단순한 위탁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통계 작성의 목적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절차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지출통계를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 또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통계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안 제3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 이상을 포섭하므로, 사회복지에 관한 범위로 제한하는 문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지출의 범위는 사회복지보다 넓고 경계가 모호하여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한 범위로 제한하여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제공자에

따라 통계 기준에 부합하는 지출내역을 누락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안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 비용에 관한 통계도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확보가 영업의 자유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노력규정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민간부문의 경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등 이미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공제회의 노령·퇴직급여, 철도·항공·방송사 등의 요금 감면 내역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일부 특정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자유와 상충될 소지가 적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은 통계 작성 업무의 위탁 근거를 제32조의2에서 삭제하고 안 제44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5.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존 사회보장위원회 업무 및 동 개정안에서의 조문 신설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1.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u> <u>2. 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u> <u>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u> <u>4. 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u> <u>5.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u> <u>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업무</u>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기존 사회보장위원회 수행 업무 및 추가되는 신규 업무의 효율적·안정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지출통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등 5개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의 경우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음.

< 업무별 위탁 필요성 및 위탁 대상 >

조항(업무)	위탁 필요성	위탁 대상 (현행 또는 계획)
제30조의2(사회보장 제도의 평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평가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한 평가 수행 필요	(계획) 정책 평가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방안 검토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등 통계의 전문적·연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연구조직 필요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 중
제32조(사회보장통계)		
제32조의2(사회보장 지출통계)		
제43조(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분석센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분석센터 운영의 법적 목적상 2개의 위탁기관 필요 - ①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해 정책연구 전문기관 필요 - ② 구축된 범부처의 종합데이터 저장,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개인정보 보안, 전산장비 유지보수, 연구자의 데이터 분석지원 등 전산운영 전문기관의 안정적 수행 필요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기초분석 등 연구용역 중 (계획) 전문기관에 분석센터 운영 위탁하는 방안 검토

자료 : 보건복지부

□ 개정안 제44조제1항제1호의 평가 업무는 신설되는 안 제30조의2에 따른 것으로서, 안 제30조의2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업무와 그에 필요한 정보요청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어지는바, 평가 업무를 전부 위탁하도록 한 경우 그에 필요한 정보요청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만약 위탁받은 기관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제한과 정보관리 주의 의무, 활용한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보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6.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사회보장 분야 시범사업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사회보장 제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체계적 점검·평가 강화가 필요함.

또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행주기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의 근거 및 관계기관의 자료 제공을 법률에 명문화하며, 조문 신설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의 지속적·안정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